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 시 위원석으로 이동〉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97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 박충권 · 조경태 · 인요한 · 김용태 · 서일준
김대식 · 정성국 · 김선교 · 정동만 · 박성훈 · 윤영석
김소희 · 최은석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 의안번호 : 859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

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위원으로서의 질의 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발언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위원의 발언) ①·② (생략) <u><신설></u>	제60조(위원의 발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이 제49조에 따른 위원장의 직위가 아닌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u>

현행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제49조¹⁾),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발언을 원하는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음(제60조제1항²⁾).

1)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

개정안은 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성격이 아닌 위원으로서의 질의나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도 양자가 엄밀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특정 발언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위원으로서의 발언인지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위원석으로의 이동 및 직무대리 간사 지정 등의 절차로 의사 진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14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